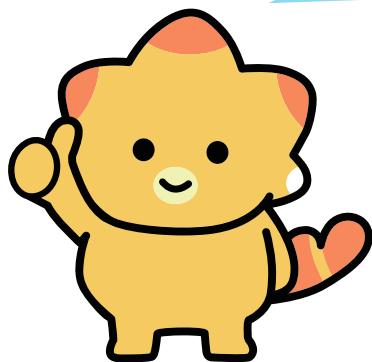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2025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안내

화성시 일반현황

01 2025년 우리시 살림규모	04
02 지방세 담당조직	05

I 지방세 개요

01 지방세 개념	08
02 지방세 구조	09
03 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12
04 지방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14
05 지방세 세율 개요	16
06 지방세 용어의 이해	18

II 지방세 세목별 안내

01 취득세	22
① 취득세 세율표(일반, 종과세)	24
② 취득세 과세대상	27
③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29
④ 취득유형별 과세표준	31
02 등록면허세	33
① 등록면허세 세율	35
03 레저세	38
04 담배소비세	39
05 지방소비세	41
06 주민세	43
07 지방소득세	45
08 재산세	50
① 재산세 세율	53
09 자동차세	55

CONTENTS

10 지역자원시설세	57
11 지방교육세	59

III 유용한 지방세 제도

01 지방세 감면제도	62
02 지방세 구제제도	73
03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76
04 지방세의 분납 및 물납	79
05 지방세 체납 시의 제재	82
06 납세증명서의 제출	83
07 화성시 마을세무사 제도	84
08 화성시 선정대리인 제도	86
09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서비스	87

IV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01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90
02 지방세 납부가 이렇게 편리합니다	92
03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94

V 유익한 세무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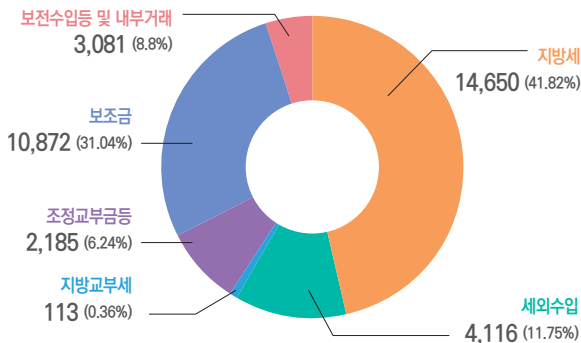
01 세금 관련 증명원 발급처 현황	98
02 세금 관련 증명원 발급 인터넷 주소	98

01 화성시 일반현황 2025년 우리 시 살림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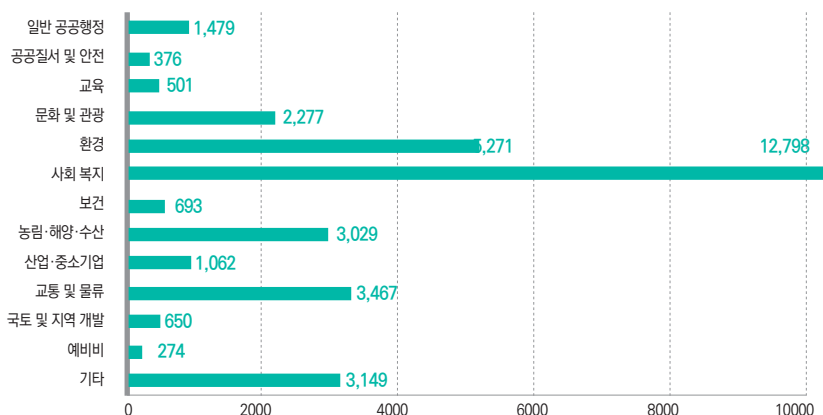
○ 화성시의 일반현황 | 기준 : 2025년 1분기 |

면적 844km ²	인구 1,040,927명	세대수 420,651가구
차량등록대수	자동차 553,678대	
	(승용 : 464,866대, 승합 : 13,016대, 화물 : 73,446대, 특수 : 2,480대)	
행정기구	2출장소, 29개 읍·면·동 (읍 4, 면 9, 동 16)	
총예산액	3조 5,027억원 (2025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 3조 1,187억원, 특별회계 : 3,840억원)	

○ 세입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 세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02

지방세 담당조직

세정과

주소 (18274)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FAX (031)5189-1614

팀이름	업무내용	전화번호
세정정책팀	세정기획, 조례, 세수추계, 마을세무사	5189-2182
시세1팀	재산세	5189-1769
시세2팀	재산세	5189-3784
시세3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 전산운영	5189-1474
과표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5189-2183
지방소득세팀 1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189-6529
지방소득세팀 2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장수분)	5189-1030

도세관리과

주소 (18274)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FAX (031)5189-1664

팀이름	업무내용	전화번호
도세행정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5189-1770
도세민원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5189-2186
세무조사팀	법인세무조사, 과점주주 기획조사, 범죄사건 조사	5189-2184
기획조사팀	기획세무조사, 부동산 취득세(감면) 사후관리	5189-2175
차량세무팀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5189-2135

징수과

주소 (18274)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FAX (031)5189-1506

팀이름	업무내용	전화번호
징수정책팀	지방세환급, 세입일계, 월보, 결산, 실태조사반 운영, 금고지정	5189-2181
지방세체납관리팀	고액체납자 관리(현년도), 부동산·자동차·기타채권·예금압류 및 해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5189-2195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	고액체납자 관리(통합),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부동산 및 자동차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189-3783
세외수입관리팀	세외수입 총괄	5189-2185
세외수입체납징수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5189-2196

동부출장소 세무과

주소 (18401) 화성시 병점3로 23 FAX (031)5189-4912, 4913

팀이름	업무내용	전화번호
세정팀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세 환급	5189-4094
재산세팀	재산세,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5189-4098
징수팀	결손처분, 부동산·자동차·기타채권·예금압류 및 해제, 고액체납자 관리,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5189-4096
도세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5189-4096
지방소득세팀	지방소득세(법인소득·양도소득·종합소득·특별징징수분)	5189-4149

※ 동부출장소 관할지역 : 정남면,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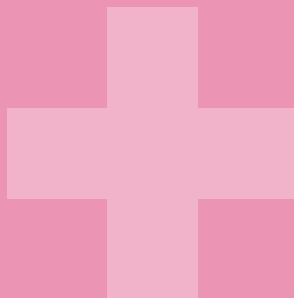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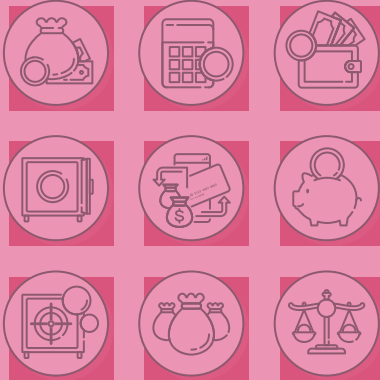
동탄출장소 세무과

주소(18478) 화성시 동탄역로 122, 5층 FAX (031)5189-5651

팀이름	업무내용	전화번호
세정팀	자동차세, 지방세 환급	5189-2182
재산세팀	재산세,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5189-1769
징수팀	결손처분, 부동산·자동차·기타채권·예금압류 및 해제, 고액체납자 관리, 관허사업 제한	5189-3784
도세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5189-2183
지방소득세팀	지방소득세(법인소득·양도소득·종합소득·특별징징수분), 주민세	5189-6529

※ 동탄출장소 관할지역 :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 화성 세무서시청 민원실 : 국제 증명서발급 등 / 화성시청 세정과 내 위치 (031) 5189-6527



I 지방세 개요

01 지방세 개념	08
02 지방세 구조	09
03 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12
04 지방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14
05 지방세 세율 개요	16
06 지방세 용어의 이해	18

01

지방세 개념

○ 개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사람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탄력세율제도)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과 납부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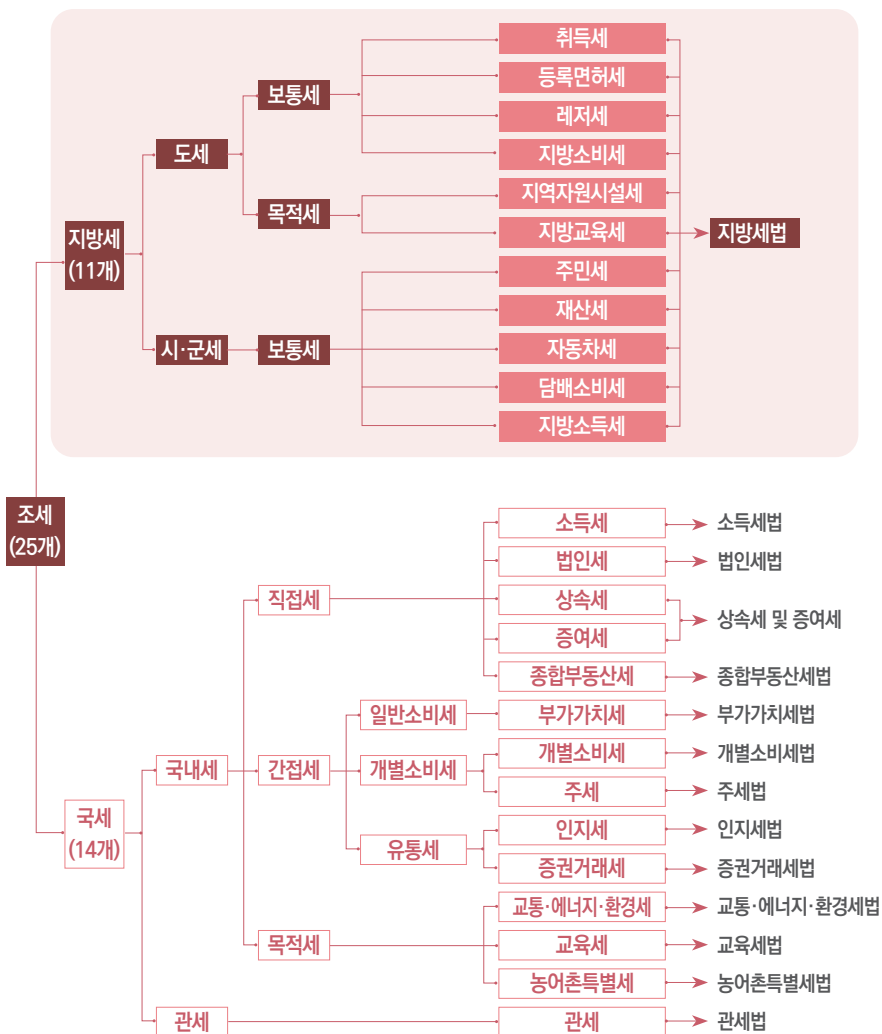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관계법입니다.

02

지방세 구조

개념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귀속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기초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누어 집니다.



○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광역자치단체인 도 본청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광역시 세목입니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은 특별시세이며,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이 해당 도와 시의 세목입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과 목적

세 목	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한 자에게 부과함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등록분과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뉨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과세함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과세함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은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으로 구분함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
주민세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사업소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함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함 2014년도부터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5종의 재산이 과세대상 -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평가하므로 별도의 과세대상임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과거 주행세인 주행분으로 나뉘고,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 -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음 ※ 2021년부터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함

03

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월별	지 방 세		국 세
	도 세	시·군세	
1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 31.한) ▪ 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1. 31.한)	▪ 등록면허세(면허분) (1. 31.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 25.한)
3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 납부/분할 납부 (3. 31.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3. 31.한)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4. 30.한)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 25.한)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동시신고납부(5. 31.한)		▪ 사업,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5. 31.한)
6월	▪ 자동차세(소유분) 납기 (6. 30.한)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 납부(6. 30.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6. 30.한)
7월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7. 31.한) ▪ 재산세 [주택(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납기 (7. 16. ~ 7. 31.) ※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일괄 부과·징수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분)납기 (7.16. ~ 7.31.)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 25.한)
8월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기 (8. 16. ~ 8. 31./8. 1. ~ 8. 31.)		
9월	▪ 재산세[주택(나머지 1/2), 토지분](9. 16. ~ 9. 30.)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 납부/분할납부(9. 30.한)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분) 납기 (9. 16. ~ 9. 30.)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9. 30.한)
10월	▪ 6월말 결산법인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 31.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 25.한)

월별	지 방 세		국 세
	도 세	시·군세	
11월			종합부동산세 중간 예납 (11. 30.한)
12월	- 자동차세(소유분) 납기 (12. 16. ~ 12. 31.) - 자동차세(소유분) 분할납부 (12. 31.한)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12. 31.한) - 종합부동산세 납기 (12. 1. ~ 12. 15.)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매달 10일한) - 주민세(종업원분)(10일한) - 담배소비세(다음 달 말일 한) - 자동차세(주행분) (다음달 말일 한)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레저세(10일한)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와 동일)	- 교통·에너지·환경세 (다음달 말일 한) - 원천징수 소득세 등 (다음 달 10일한)
수시	- 자동차세 일할 계산 수시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면허세 (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04

지방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 부과
주민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8.16. ~ 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8.1. ~ 8.3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6.16. ~ 6.30.) / 제2기분(12.16. ~ 12.31.) ▪ 수시분 : 중고차 매매시 일할 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특별징수	▪ 법인지방소득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 5.31.)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2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 및 수사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 시 수시부과
레저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설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 '지하수'는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매년 7월(16~31), 9월(16~30) : 기존 공동시설 세분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등록분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 매년 1.16. ~ 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재산세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 소비세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지방 교육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세·담배소비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레저세 신고 납부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05 지방세 세율 개요

월별	지방세		국세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 일반세율 : 2.8%, 3.5%, 4.0% 등 - 유상취득(주택) : 1.0% ~ 3.0% - 중과세율 : 4.4%, 8.0%, 8.4%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25.3%(‘21년부터)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1천분의 6 ~ 1천분의 45	
	양도소득		1천분의 6 ~ 1천분의 45 / 1천분의 10 ~ 1천분의 70	
	법인소득		1천분의 9 ~ 1천분의 24	
	특별징수		법인·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주민세	개인분	개인	1만원 이내 (주민청구시 1만5천원 이내)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개인사업자, 법인	1㎡당 250원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종업원분	급여액(1억천만원 초과)	급여총액의 0.5%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년 1cc당 80~200원
			영업용	년 1cc당 18~24원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2만5천원~11만5천원 6천6백원~15만7천5백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 5. 21.)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당 1,007원	
레저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 ~ 0.12%	
	특정자원분	지하수, 발전용수 등	채수량 1㎡당 20원 / 발전용수 10㎡당 2원	

월별	지 방 세		국 세
지방 교육세	취득세2%세액 × 20%, 등록면허세액 × 20%, 레저세액 × 40%, 담배소비세액 × 43.99%, 주민세액(균등분) × 25%, 자동차세액 × 30%, 재산세액(도시지역분제외) × 20%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 0.1, 0.15, 0.25, 0.4% ■ 건축물 0.25% ■ 토지 종합 : 0.2, 0.3, 0.5% - 별도 : 0.2, 0.3, 0.4% - 분리 : 0.07% ~ 4%
	재산세 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등록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2.0), 설정(0.2)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법인등기	영리법인 : 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4천5백원 ~ 6만7천5백원

06

지방세 용어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함

지방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함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함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함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함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때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임
-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라는 세가지 방식이 있음
-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음

과세물건

-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함

과세표준

-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함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세액산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세율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일반적으로 1,000분율로 표시되며, 세목에 따라서 금액,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세액

-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

납세고지서

-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세율·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에 위반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함

법정신고기한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함

신고납부

-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됨.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해당됨

보통징수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함

특별징수

-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 하는 징수방법을 말함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체납처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함

체납처분비

- 「지방세징수법」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함

체납자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함

체납액

-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함

II 지방세 세목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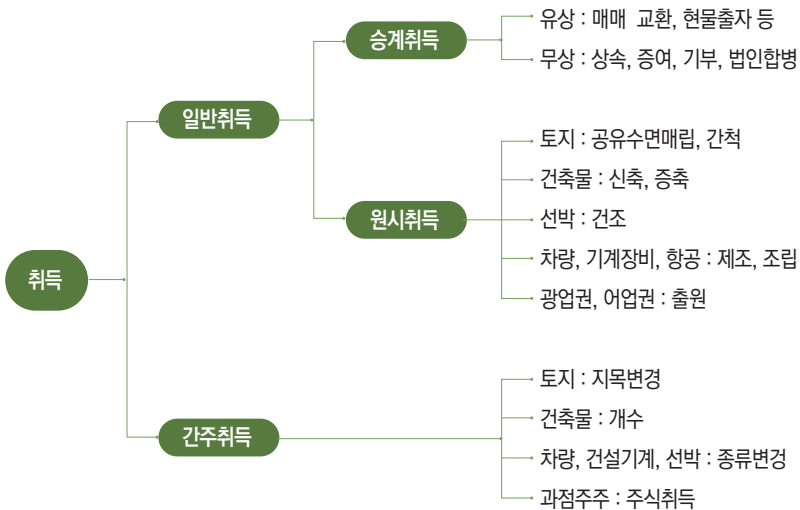
01 취득세	22
02 등록면허세	33
03 레저세	38
04 담배소비세	39
05 지방소비세	41
06 주민세	43
07 지방소득세	45
08 재산세	50
09 자동차세	55
10 지역자원시설세	57
11 지방교육세	59

01 취득세(舊 취득세+등록세¹⁾)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

○ 취득의 정의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 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을 취득하는 행위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등(간주취득)
 -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1) 구(舊)취득세 및 등록세는 2011. 1. 1. 법률 제10221호(2010. 3. 31. 전부 개정)로 지방 세목이 통합되기 전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말함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 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
 -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
 - ※ 납부지연가산세 (①+②+③+④)
 - ① 과소납부분 세액의 1일 10만분의 22, 최대 100분의 75 한도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장 제1호)
 - * 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
 - ② 초과환급분 세액의 1일 10만분의 22, 최대 100분의 75 한도(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장 제2호)
 - * 종전 환급불성실가산세에 해당
 - ③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100분의 3(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장 제3호)
 - * 종전 가산금에 해당
 - ④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만분의 66, 최대 60개월 한도(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장 제4호)
 - *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
 - ※ '24.1.1.부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장 제4호의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45만원 (기존 30만원)으로 상향 적용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
-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1,000분의 40(4%)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주택유상거래 : 취득가액의 6억이하 1%, 6억~9억 1.01~2.99%, 9억초과 3%

※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x2/3억원-3)x 1/100

(1) 취득세 세율표(일반, 중과세)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1,000(2.3%)	
		상속 외	28/1,000(2.8%)	
	상속 외 무상취득	상속외 무상 취득	35/1,000(3.5%)	
		비영리사업자 취득	28/1,000(2.8%)	
	원시취득		28/1,000(2.8%)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23/1,000(2.3%)	
	합유·총유물의 분할 취득		23/1,000(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0/1,000(3.0%)	
		농지 외	40/1,000(4.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 외의 것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0/1,000(1.0%)	
		취득당시가액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2/3억원-3) x 1/100	
취득당시가액 9억원 초과		30/1,000(3.0%)		
법인의 합병·분할		40/1,000(4.0%)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선박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 (소형선박 제외)	상속취득	25/1,000(2.5%)
			상속 외 무상취득	30/1,000(3.0%)
			원시취득	20.2/1,000(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1,000(2.02%)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	30/1,000(3.0%)
		소형선박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20.2/1,000(2.0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20.2/1,000(2.02%)
		그 밖의 선박		20/1,000(2.0%)

구 분				세 율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7.0%)	
			경자동차	40/1,000(4.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20/1,000(2.0%)	
		그 밖의 자동차(비영업 용승용차, 이륜자동차 외의 자동차)	비영업용	비영업용	501,000(5.0%)
				경자동차	40/1,000(4.0%)
			영업용		40/1,000(4.0%)
		위 외의 자동차			20/1,000(2.0%)
	기계 장비	기계장비		30/1,000(3.0%)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0/1,000(2.0%)	
	항공기	항공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0/1,000(2.0%)	
		그 밖의 항공기		20.2/1,000(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1,000(2.01%)	
입목			20/1,000(2.0%)		
광업권·어업권			20/1,000(2.0%)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20/1,000(2.0%)		

○ **중과세율: 표준세율+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구 분	세 율
①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택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택재산 중 위탁자가 신택기간 중 또는 신택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00/100)
②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및 법인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대도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300/100)- (중과기준세율×200/100)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400/100)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00/100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00/100)+ (중과기준세율×200/100)

*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세율의 특례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또는 중과기준세율 적용**

구 분	세 율
①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1가구 1주택의 취득,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원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② 간주취득 등의 세율 특례 - 건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세 등	중과기준세율

(2)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지방세법 제6조 제7호), 총 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 정격 출력 4KW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됨(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리고 원동기의 동력원이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또는 전기인지 등은 묻지 않으며, 차량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됨. 차량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과세 한다는 점에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와 다른 점임

○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 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8호)

○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9호)

○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0호)

○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1호)

○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2호)

○ **어업권**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3호)

○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5호)

○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7호)

○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8호)

(3)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¹⁾ ① 화해조서·인낙조서 ②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 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상승계취득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 한 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 ② 공정증서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 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 신고필증 교부일)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인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 연장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취득유형별 과세표준

구 분			과세표준	비 고
무상 취득	상속		시가표준액	
	증여	1억 이하	시가표준액	예외 : 납세자가 시가 인정액 선택 가능
		1억 초과	시가인정액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예외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가능 [시가인정액 유형] - 매매사레가액 - 감정가액 - 경매·공매가액 - 유사매매사레가액
	(부담부 증여)	채무 부담액 외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채무부담액)	
		채무부담액	사실상 취득가격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유상 취득	매매 등	개인	사실상 취득가격
		법인	사실상 취득가격	
원시 취득	건축 (신축, 증축, 재축 등)		사실상 취득가격	예외 : 시가표준액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 표준 특례	차량 건설 기계	무상	시가표준액	
		유상	사실상 취득가격	예외 :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격 신고가 없거나 사실상 취득가격 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차량제조회사 직접사용시)	사실상 취득가격	

구 분		과세표준	비 고
과세 표준 특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	예외 : 추가지급액 포함 예외 : 시가인정액 초과시 시가인정액
	교환	시가인정액(이전받는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시가인정액 중 높은 금액)	
	양도담보	채무액	예외 : 추가지급액 포함 예외 : 시가인정액 초과시 시가인정액
	법인합병·분할·조직 변경	시가인정액	예외 : 시가표준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도정법 등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의 비조합원 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 취득	취득가액 $= Ax[B-(Cx \cdot B/D)]$	A : 해당 토지의 ㎡당 분양가액 B : 해당 토지의 면적 C :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중 취득한 토지 면적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제외) D :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취득가액 $= Ax[B-(Cx \cdot B/D)]-E$	A : 해당 토지의 ㎡당 분양가액 B : 해당 토지의 면적 C :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진행 중 취득한 토지 면적 D :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E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간주 취득	도시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토지(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 초과분)	취득가액 $= (Ax \cdot B)-C$ 전체 면적	A : 해당 토지의 ㎡당 분양가액 B : 해당 토지의 면적 C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개수·지목변경·구조변경	사실상 취득가격	예외 : 시가표준액
	과점주주	원가	법인장부상 부동산 가액 x 주식지분

2) 2024. 4. 1. 부터 시행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 (영 위임)

02

등록면허세(舊 면허세+등록세³⁾)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됨

○ 과세대상

- **등록분**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면허분**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납세의무자

- **등록분** : 등록을 하는 자
 - 등기·등록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 **면허분** :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 ~ 1. 31.)에 부과·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
 - 수시분 : 무신고시 보통징수(부과·징수)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등록분만 해당)**
 -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된 가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채권금액
 - ※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
 -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연부취득, 취득세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경우, 면세점 이하 물건은 취득 당시 가액
 - ※ 단,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취득 당시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세율

- **등록분** : 부동산(보전 0.8%, 이전 1.5~2.0% 등), 선박(보전 0.02%, 기타 건당 15,000원), 차량(비영업용 5%, 경차 2%) 등
- **면허분** : 면허의 종별(1~5종), 지역별로 4,500원 ~ 67,500원 차등 부과 등록분

(1) 등록면허세 세율

○ 등록분

구 분		현행세율
부동산 등기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의 이전(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2.0%
	소유권의 이전(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1.5%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0.2%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0.2%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0.2%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5,000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0%
	소유권 등록(그 밖의 비영업용 차량)	3.0%(경자동차 2.0%)
	소유권 등록(그 밖의 영업용 차량)	2.0%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2.0%
	취득대금을 지급한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건당 15,000원
	취득대금을 지급한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	건당 15,000원
	취득대금을 지급한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건당 15,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건설기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등록	0.2%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건당 10,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구 분		현행세율
공장·광업 재단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1.0%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9,000원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1.0%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상호 등 등기	기 타	건당 40,200원
	상호설정 등	건당 78,700원
	지배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선박관리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광업권	설정	건당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건당 66,500원
	변경(감구)	건당 15,000원
	이전(상속)	건당 26,200원
	이전(상속 외)	건당 9,000원
	기타	건당 12,000원
	조광권 등록(조광권 설정)	건당 130,500원
	조광권 이전(상속)	건당 26,200원
	조광권 이전(그 밖의 원인 이전)	건당 9,000원
	조광권 등록(그 밖의 등록)	건당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건당 6,000원
	이전(상속 외)	건당 40,200원
	지분이전(상속)	건당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건당 21,000원
	기 타	건당 9,000원

구 분		현행세율	
저작권 등	상속	건당	9,000원
	상속 외(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제외)	건당	40,200원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중 상속 외	건당	20,000원
	기 타	건당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건당	12,000원
	이전(상속 외)	건당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갱신	건당	7,600원
	이전(상속)	건당	12,000원
	이전(상속 외)	건당	18,000원
항공기의 등록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0.0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외의 등록		0.02%
기타		건당	12,000원

면허분

구 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03

레저세

※ 마권세('61, 경마) → 경주·마권세('93, 경마, 경륜·경정 추가) → 레저세('02) →
레저세('03,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경기 추가)

○ 과세대상

- 경륜 및 경정, 경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
- ※ 사업장 분포 : 경마(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 29개소), 경륜(부산, 창원, 광명, 장외 20개소), 경정(하남, 장외 18개소), 소싸움경기(청도)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부산지방공단·창원경륜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 납부 및 납기

- **납부** :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
 - 본장 :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신고·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될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납부
- **납기** : 승자·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과표 및 세율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 투표권 발매가액의 10% 부과되며,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04

담배소비세

※ '89년 방위세, 교육세, 담배판매세 등을 폐지하면서 담배소비세로 일원화

○ 개요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담배사업법 제2조)
- 상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과세대상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

○ 납세의무자

- ① 담배를 제조하는 자
- ②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③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 KT&G, PM(필립모리스), BAT(브리티쉬 아메리칸 타바코)

○ 납세지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국내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

○ 세율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부과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 율
피우는 담 배	제1종 껴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껴련	1g당		103원
	제4종 각련	1g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①니코틴용액 1㎖당		628원
		②연초 및 연초 고형물 사용	껴련형 : 20개비당	897원
			기타형 : 1g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 껴련담배의 경우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1갑(20개비)당 641원 부과(총량제)

납부방법

-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

05

지방소비세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비세 과세

○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율) 과세표준의 100분의 253
 -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2013년)에 따른 세수 보전조치로 5% → 11%로 인상(2014년)
 -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15%로 인상(2019년 4%인상) →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전환에 따라 21% 인상(2020년 6% 인상) → 25.3%(2022년 4.3% 인상)

○ 인분기준

- 지역별 소비지출에 따른 부분 5%p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
 ※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가중치 :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은 100%, 광역시 200%, 도 300%

▪ 취득세 감소분 등에 따라 배분하는 부분 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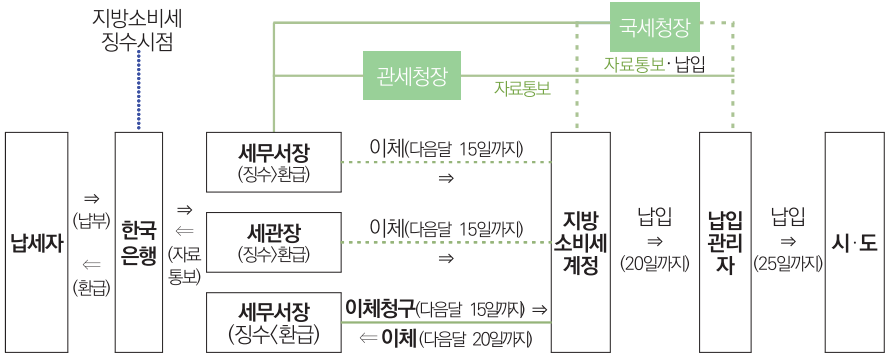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 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

▪ 국고보조금의 지방사업 전환과 연계한 인상분 10%p 배분 부분

지역별 소비지출에 따른 부분(5%p) 및 취득세 감소분 등에 따라 배분하는 부분(6%p)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안분방식 규정

구 분	안분방식	납입받는 자
가. 전환사업보전분(3년한시)	대통령령 (전환사업 비용보전)	지역상생발전기금
나. 기초지자체·교육청 재원변동 보전분(3년한시)	대통령령(감소액 보전)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교육감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금액	대통령령 (지역별 소비지출 고려)	시·도지사

[지방소비세 징수업무 흐름]



06

주민세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2021년) 및 주민세 납부기한을 8월로 통일

○ 납세의무자

- **개인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 이내(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세액)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사업소분**

①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②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세율
50억원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0억원 이하	5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③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세, 500원

* 과세제외 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범위에서 가감하는 등 탄력세를 적용 가능

○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개인분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기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07

지방소득세

종전의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세 형태로 부과, 징수되어 왔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목적으로 독립세의 방식으로 전환

○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액에 과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소득세법」 제5조)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 1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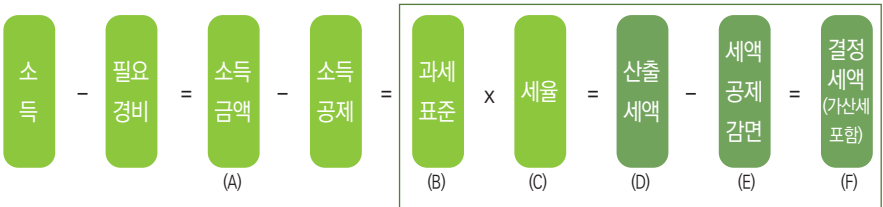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 율	개 인 분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1천400만원 초과 ~ 4천만원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천만원 초과 ~ 8천800만원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153만6천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법 인 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8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특별 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탄력 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 2025.1.1.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조정 개정함

○ 과세구조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 (~ 13년) 국세 부가세 형식 : 결정세액(F) x 10% = 지방소득세

*(14년 이후) 독립세 전환 : 과세표준(B) x 지방소득세율(C) - 공제·감면(E) = 지방소득세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구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주소지	근무지

-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인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right]$$

○ 납부(징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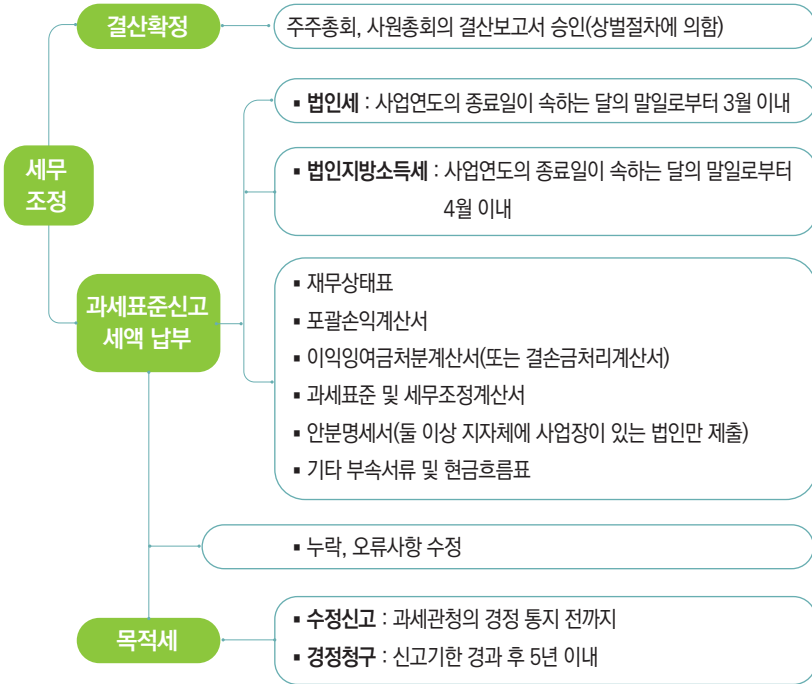
-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종합소득은 전국 지자체 가능, 무관할)

개 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 예정신고 납부 :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확정신고 납부 :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
법 인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이내 신고·납부
	청사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내 신고·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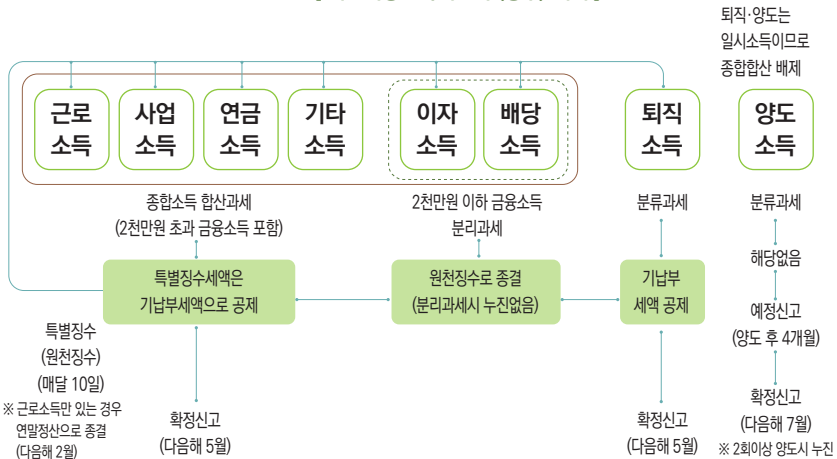
-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급여,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존과 동일)
 -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결정·경정** :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익제도 도입
 - 무관할 신고제도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가 시행되는 20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관계 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경정청구 가능
 - 소규모사업자 신고간소화 제도
 - 소규모사업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로 신고한 것으로 가주
 -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백만원 ~ 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40호 서식(4)로 신고
 - 양도소득분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국세보다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납세자의 신고행위 없이도 관할 자치단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시 신고간주토록 신고간소화

○ 납부체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징수) 체계]



08 재산세(舊 도시계획세⁴⁾ 포함)

○ 과세대상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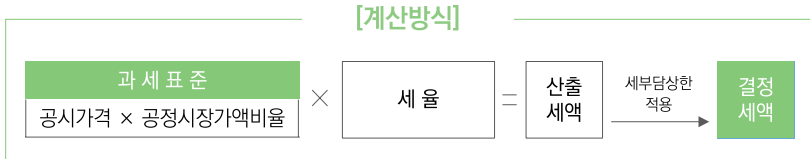
- 토 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주 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기 타 항공기, 선박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

구분	내 용
원칙적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예외적 납세의무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증재산으로서 중증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주된 상속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함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매수 계약자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 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하는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

4) 구(舊) 도시계획세는 2011. 1. 1. 법률 제10221호(2010. 3. 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의 세목으로 현행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말함

○ 세액산출 구조



※ 공정시장가액 비율 :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 세율

- 주택 0.1%~0.4% / (1세대 1주택, 9억원 이하) 0.05%~0.35%
-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 0.25%
-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전·답·과수원 등 0.07%, 골프장·고급오락장 4%, 그 밖의 토지 0.2%)
- 선박 0.3%(단 고급선박 5%) - 항공기 0.3% - 도시지역분 0.14%

■ 과세표준 상한(지법 제110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
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 과세표준상한율 = 0 에서 100분의 5 이내

■ 세부담 상한(~2028년12월31일)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에 징수할 세액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별도·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 무허가건물 부속토지 제외 ▪ 별도합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용 토지 등 - 자동차운송사업용, 운동시설용, 부설주차장용, 유통시설용, 원형 보전임야 등 17건	<저울 분리과세 (0.07%)> ▪ 농지(도시지역 내 농지는 제외) ▪ 특정 임야(보전산지 내 등) <일반 분리과세 (0.2%)> ▪ 읍·면·산업단지 소재 공장용 토지 ▪ LH·전기·가스·수자원공사의 사업용 토지 등 공익적 성격의 토지 30여건 <고울 분리과세 (4%)> ▪ 고급오락장, 회원제 골프장 등
▪ 세율 0.2~0.5% ▪ 공시가격 5억 초과는 종부세 과세	▪ 세율 0.2~0.4% ▪ 공시가격 80억 초과는 종부세 과세	▪ 세율 0.07%~4% ▪ 종부세 제외

○ 납기

과세대상	납 기
토 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 축 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 택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선 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 공 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물납 및 분납

구 분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법 재산세 납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물납신청 ■ 물납대상자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부동산
분할납부	■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 예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 육세는 제외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방법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분납신청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주택, 건축물(0.04%~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1) 재산세 세율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③ 분리과세대상

과세대상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시(읍·면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주택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선박

-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09

자동차세(舊 주행세⁵⁾ 포함)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제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 과표 및 세율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일반 승용자동차(배기량)				기타승용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1,000cc이하	cc당 18원	1,000cc이하	cc당 80원	2만원	10만원
1,600cc이하	cc당 18원				
2,000cc이하	cc당 19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2,500cc이하	cc당 19원				
2,500cc초과	cc당 24원	1,600cc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② 승합자동차 등

- 승합차 : 자동차 종류별 영업용 2.5~10만원, 비영업용 6.5~11.5만원
- 화물차 : 적재용량별 영업용 6,600~45,000원, 비영업용 28,500~157,500원

5) 구(舊)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2011. 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합되기 전의 세목이며 현재의 자동차세(소유분 및 주행분)를 말함

- 특수자동차 : 영업용(소형 13,500원, 대형 36,000원), 비영업용(소형 58,500원, 대형 157,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 부과·징수방법

-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본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1일과 12월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 年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의 범위에서 세액 공제(2021년부터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 세액 공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 개요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00년 도입)

- **납세의무자**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 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수입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령에 따라 26%의 조정세율을 적용함

○ 부과·징수방법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10

지역자원시설세

○ 개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

- 특정자원·시설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시설분 |

구분	발전용수	원자력	화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세율/ 과표	2원/10㎥	1원/KWh	0.6원/KWh	음용수: 200원/㎥	채취가액의 0.5%	1만5천원/TEU
				목욕용: 100원/㎥		
				기타: 20원/㎥		

| 소방분(재산가액의 0.04 ~ 0.12%) |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①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비거주용 건축물 등 일반세율의 2배 중과세
- ②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및 11층 이상 비거주용 건축물 3배 중과세

○ 부과·징수방법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

11

지방교육세

※ '00.12.29. 지방교육세 신설, '01.1.1 시행

○ 개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에 부가하는 목적세

○ 납세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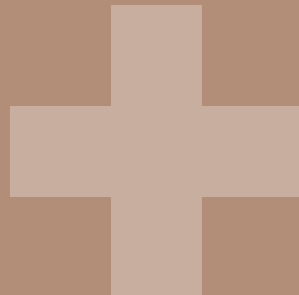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의 100분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

○ 부과·징수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
- 부과징수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Ⅲ 유용한 지방세 제도

01 지방세 감면제도	62
02 지방세 구제제도	73
03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76
04 지방세의 분납 및 물납	79
05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82
06 납세증명서의 제출	83
07 화성시 마을세무사 제도	84
08 화성시 선정대리인 제도	86
09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서비스	87

01

지방세 감면제도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감면(자특법 제6조)]

○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 취득세 : 50% 경감(2026. 12. 31.한)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그와 잇달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를 말함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 한함)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

○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귀농인(歸農人)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조제4항)]

○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7. 12. 31.한)

- 취득세 : 50% 경감
- 농어촌특별세 : 감면분 비과세

○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이주한 해당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포함)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귀농인의 요건

- ①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 ②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③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경감된 취득세 추징(사유)

- ①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그 지역과 연결한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③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업용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④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6조)]

○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7. 12. 31.한)

- 취득세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 농어촌특별세 : 감면분 비과세

○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 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 이하인 경우로 한정)

○ 감면받은 취득세 추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주택에 상시 거주를시작한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취득일 이전에 개량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표 등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지방세운영과-2169(2012.7.10.)〉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7조 및 영 제8조)]

○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 취득세·자동차세 : 면제 (2027. 12. 31. 한)
- 농어촌특별세 : 면제

○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지특령 제8조 및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시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초과 10도이하로 남은 사람

○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 ※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에 한함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 ※ 아래 중 최초 감면신청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면제받은 취득세 추정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 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함

추징제외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9조)]

○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2027. 12. 31.한)

- 취득세 면제 :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 면제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농어촌특별세 : 감면분 비과세
 - ※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지특법 제177조의2) :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100%) 되는 경우 면제 규정에 도 불구하고 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단,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하는제외)

○ 감면요건

- 취득세 :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함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 = 부동산 소유자)
- 재산세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대상 부동산

- 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 ②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 ③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부동산
- ④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0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지특법 제178조)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22조의2)]

○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2027. 12. 31.한)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함)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동차

- 먼저 신청하는 1대
 -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범위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세자녀 : 140만원까지 면제(초과시 초과분은 납부)
 - 두자녀 : 50%감면(최고 70만원 한도)
-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와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세자녀 : 전액감면(200만원 초과시 총 취득세의 85%감면)
 - 두자녀 : 50%감면(한도없음)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지특법 제177조의2)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100%)되는 경우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함(단,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9조)]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6. 12. 31.한)

- 취득세 면제 :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포함)하는 부동산
- 등록면허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 해당단체

○ 감면대상자 및 내용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 대상자가 관계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함

○ 대상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물군경 유족회, 전물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 ①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 부분 포함)
- ② ①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대부금관련법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2027. 12. 31. 한)

- 취득세 · 자동차세 : 면제율(100%, 50%)

※ 단, 감면차량을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정

○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 단, 지특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용자동차로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

- ※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 ※ 아래 중 최초 감면신청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3조)

○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 취득세 : 면제

※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

○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자경농민 농지의 경우 2년 이내)
 -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 ※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고한다.

부제 부동산 소유자란 ?

-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
- ①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②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 감면대상 지역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내의 지역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의 지역

02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음.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

구 분		심리 · 의결	결 정
과세 前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심의위원회 (*절차생략가능)	시·군·구세 : 시장·군수·구청장 도세 : 도지사
과세 後	이의신청	//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회의	조세심판관
	심사청구(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원
	행정소송	재판부 판결	재판부 판결

* 사유 : ① 각하결정사유 해당, ② 청구금액 1백만원이하, 유사 인용결정사례가 있는 경우 등

○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2021. 1. 1. 시행)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포함]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2021. 1. 1. 시행)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 등)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심사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청구를 하여야 함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취하되지 않으면 불복신청은 각하됨.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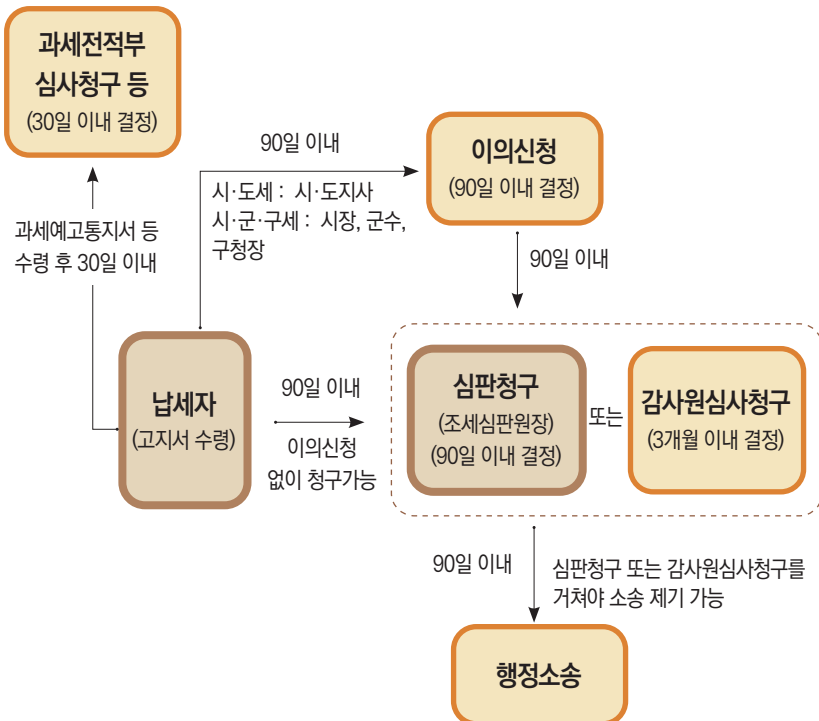
(기본통칙 117-4, 123-1)

○ 행정소송

- 지방세에 관한 쟁송에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 지방세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21. 1. 1. 시행)
※ 심판청구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세 구제절차 업무흐름도

지방세기본법 개정('19. 12. 31. 법률 제16854호)으로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21. 1. 1. 이후부터는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폐지되고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03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지방세기본법 개정('19. 12. 31. 법률 제16854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신고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의의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신고' 라 함

요건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①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②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 세관계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③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효과 적법유효한 수정신고가 있으면 수정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가산세가 100분의 90 내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됨.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음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기 제출한 자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미 제출자	비 고
• 1개월 이내 : 9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1개월 이내 : 5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50%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 신고를 한 경우 : 50%

○ 경정청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의의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정청구'라함

요건

- (원칙)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①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②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예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경정) 청구 가능
 -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화해,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②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 내용과 상이할 때
 - ③ ① 및 ②의 사유와 유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최초 신고·결정(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최초 신고·결정(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 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최초 신고·결정(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효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기한 후 신고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의의 및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함.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효과

- 기한 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한 후 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때 세액이 확정됨
-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 운영

|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 |

구 분 (효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세액의 확정력	○	X	X
가산세의 감면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 10% 감면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2개월 ~ 3개월 이내 : 30% 감면 • 4개월 ~ 6개월 이내 : 20% 감면

04

지방세의 분납 및 물납

지방세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 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음

○ 지방세분납

재산세(지방세법 제118조)

- 포함세목 : 재산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이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지방세법기본통칙 118-1 1 ②)는 분납범위에 포함되며,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 분납기준 및 방법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할납부 세액이 됨. 분할납부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함
- 효과 : 재산세를 분납처리 함에 있어서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회수하며, 기고지한 부과 결정을 조정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하며, 징수권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음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8조)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본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함.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본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지방소득세(지법 제93조 제7항 후단 및 제95조 제4항 신설)

-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2개월 이 내에 분할납부가능
- 분납기준 및 방법 :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할납부 세액이 됨.
- ※ 2023. 3. 14.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함.

○ 지방세 물납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물납세목

- 지방세를 물납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가 유일함.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것 중에서 도시지역분은 물납이 가능하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 교육세는 물납이 불가함

물납기준 및 방법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이 허용됨

물납 절차

-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아함
-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관할동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물납 허가 부동산의 평가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함. 이때 시가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 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됨. 다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지방세법시행 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것도 시가로 봄

1. 해당 부동산의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 가액 또는 공매 가액
 2.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함)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 그 취득가격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함

물납의 효과

-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05

지방세 체납시의 제재

지방세가 납부기한 이내에 완납되지 않고 체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 체납시 제재의 종류

연번	제재의 내용	법적 근거
1	납부 독촉(최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2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3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39조의2
4	출급금지	지방세징수법 제8조
5	관하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6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7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지방세법 제11조의4
8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액 자료의 제공	지방세징수법 제9조
9	[자동차세 체납에 한함]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	지방세법 제131조

06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념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징수유예 등), 제26조(부과철회) 및 제105조(체납처분유예)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 제출사유 (지방세징수법 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 유효기간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임.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음

07

화성시 마을세무사 제도

○ 이용 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 사항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 방법

행정안전부와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팩스·이메일 및 대면 상담 가능

[제4기 화성시 마을세무사 명단]

(위촉기간 : 2024. 1. 1. ~ 2025. 12. 31.)

담당 읍·면·동		세무사	상호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성시 (총 14명)	진안동	박 순 규	서현세무회계	031-296-5670	031-296-5671
	반월동				
	병점1동	박 중 훈	박중훈 세무사사무소	031-357-3161	031-357-3907
	병점2동				
	정남면	한 창 일	한창일세무회계	031-359-8781	031-366-1864
	화산동				
	봉담읍	김 대 수	수현세무회계	031-226-2744	031-226-2743
	기배동				
	비봉면	최 고	최고 세무사 사무소	031-356-8961	0508-118-1515
	매송면				
	팔탄면	윤길동	세무법인대길	031-354-3306	031-352-8077
	새솔동				
	향남읍	장 우 진	세무사 장우진사무소	031-298-2003	031-298-2006
	양감면				
	남양읍	김 덕 진	김덕진 세무사사무소	031-357-2330	031-357-2324
	마도면				
	장안면	백 은 화	세화 세무회계	031-358-0019	031-358-0084
	우정읍				
	송산면	김 선 옥	세무법인 홍익 사강지점	031-355-2795	0508-118-0433
	서신면				
	동탄1동	박 소 정	세무법인 정원	031-8055-8910	070-8244-8910
	동탄2동				
	동탄3동	정 현	세무회계 조예	031-374-4584	031-374-4583
	동탄4동				
	동탄5동	유 제 황	세무회계 수	031-223-3300	031-372-5502
	동탄6동				
	동탄7동	오경식	세무법인 한택	031-374-8036	031-206-5432
	동탄8동				
	동탄9동				

08 화성시 선정대리인 제도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임
- ※ 불복업무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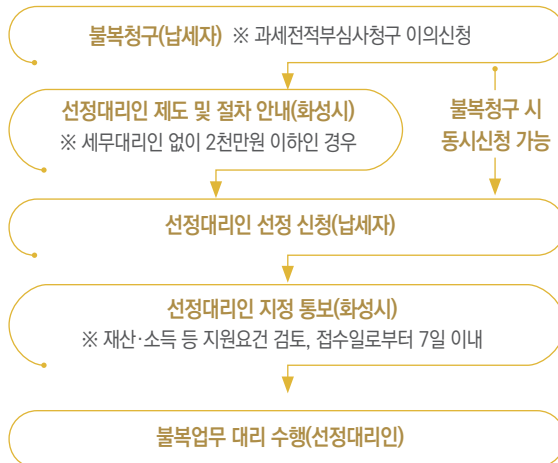
개 인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법 인

- 매출액 :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문의사항 : 화성시 감사관 시민옴부즈만 031-5189-6116

09

화성시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 서비스

○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서비스는?

- 상속에 따른 세금 신고와 같이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하여 상속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통한 국세 상속세까지 원스톱으로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

○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서비스 도입배경은?

- 민원인은 사전예약을 통해 대기시간 없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고 담당자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상속 지방세 관련 상담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양질의 납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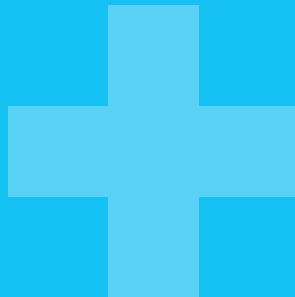
○ 대상업무

- 상속 지방세 및 국세 맞춤형 상담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접수
-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선정 및 상담
- 기타 상속 관련 국세, 지방세 상담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화성시청 통합예약시스템(<https://yeyak.hscity.go.kt>) → 지원/방문 → 방문 → 신청 → 상속지방세 및 상속관련 상담

○ 문의사항 : 화성시 세정과 : 031-5189-2168



IV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 01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90
- 02 지방세 납부가 이렇게 편리합니다 92
- 03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94

01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란?

-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앱으로 송달 받는 서비스

○ 신청대상 및 서비스대상 세목은?

-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
 ※단, 모바일 전자송달은 개인(개인사업자)만 가능
 앱 이용 시 납세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개인만 가능)
 위택스 및 이메일 이용 시 개인이나 법인/단체 회원(공동인증서 필요)
- **세목** : 지방세 정기분 세목
 등록면허세(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 이용혜택은?(고지서 1매당)

- 전자송달 신청시 : 800원 세액공제(단, 등록면허세 250원)
- 전자송달 + 자동이체 동시신청시 : 1,600원 세액공제(단, 등록면허세 500원)
- ※ **자동이체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위택스, <http://www.wetax.go.kr>) ▶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통장, 신분증 지참) ▶ 거래은행 또는 화성시청 세정과 세정정책팀

○ 이용방법은?

- 모바일 : 앱다운로드 → 로그인 후 간편하게 지방세 고지서(청구서) 신청 가능
- 이메일, 전자고지함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전자송달 신청 가능
 ※ 신청한 다음달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세목부터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 송달

간편결제앱 : 네이버페이



페이코 PAYCO

카카오페이



금융 앱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IBK기업은행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MG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금융결제원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K bank

간편결제앱 이용방법(절차)

 pay

카카오페이

신청

카카오톡 ▶ 더보기(···) ▶ pay선택 ▶ 청구서 ▶ 내청구서 ▶
지방세수도요금 ▶ 지방세 ▶ 신청

고지서 조회·납부

카카오톡 수신 ▶ 청구서 보기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결제하기

 N pay

네이버페이

신청

네이버 ▶ 앱삼선(≡) ▶ 로그인 ▶ 이름(별명) ▶ 네이버Sign
▶ 고지·청구서탭 ▶ 전국(서울 외)지방세 ▶ 신청

고지서 조회·납부

알림메시지 수신 ▶ 네이버앱에서 고지함 확인 ▶ 해당 고지서 선택 ▶
본인 확인 ▶ 네이버페이를 바로 납부 ▶ 결제수단 선택 ▶ 결제하기

 PAYCO

신청

페이코앱 ▶ 청구서 ▶ 전국 지방세 ▶ 신청

고지서 조회·납부

알림메시지 수신 ▶ 해당 고지서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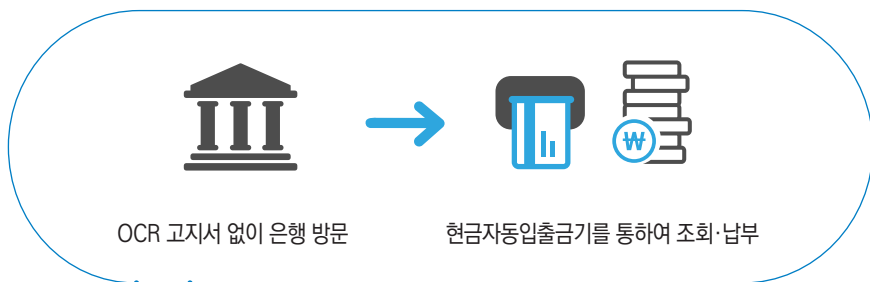
다른 전자송달 방법은?

지방세 고지서를 위택스(www.wetax.go.kr)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 위택스에 접속후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 전자송달 신청)
- 스마트위택스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공인인증서 필요) ▶ 전자송달 신청)
- 상용메일 :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인증 메일 확인

02 지방세 납부가 이렇게 편리합니다

○ 납세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 납부번호나 본인이 신청한 간편납부번호(15자리)를 알고 있으면 조 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부 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드립니다.

○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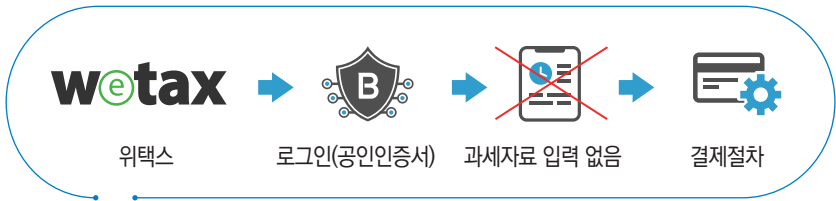
- 납부할 수 있는 은행 :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22개 기관)

○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에서 납부하실 때도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의 경우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할부수수료 별도)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편리해졌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적용카드사(13개사)

- 삼성, 롯데, 신한, 하나, 현대, 씨티, NH 농협, KB국민, 비씨, 제주, 수협, 광주, 전북
(이용관련 세부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그 외에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위택스 : www.wetax.go.kr)하는 경우 어떤 은행계좌를 선택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예약납부**를 선택(위택스)하여 본인이 원하는 납부일을 사전에 미리 정해두면 해당일에 자동으로 지방세가 납부됩니다.
-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가상계좌이체납부**도 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 및 납부금액은 고지서나 화성시 콜센터(☎1577-4200)에서 확인
-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능 (법인 제외)

03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 를 신고·납부하면 편리합니다.”
 “세무사, 회계사의 대리인 신청으로 신고·납부 대리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WeTax)란? www.wetax.go.kr

위택스는 전국의 지방세를 관공서,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신고·납부 및 부과된 지방세의 조회, 이메일 고지서 신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전자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분, 법인세분, 양도소득세분)
-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
- 취득세, 등록면허세(정액/정률)
-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2. 인터넷 조회 및 납부 서비스

-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전세목)
- 납부결과, 압류내역조회
- 신고내역, 전자고지(이메일 고지)내역조회

3. 인터넷 신청 서비스 대상

- 지방세 고지서 이메일(E-Mail)고지 신청
- 과오납 지방세 환급 신청 (회원 가입후 환급대상이 발생되면 이메일로 자동통보)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일시납부하면 10%세금 할인)
- 자동이체 신청

○ 회원가입 신청방법

전자신고·납부 서비스이용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택스 접속

회원가입 선택

개인·법인 선택

회원정보 입력

공인인증서 확인

가입 완료

○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위택스	- URL : www.wetax.go.kr - 납세정보 : 주민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 전자신고·납부시간 : 07:00~23:30 - 납세정보확인 : 24시간
스마트 위택스 (Android, iOS)	- URL : smart.wetax.go.kr - 설치 :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설치 - 납세정보 : 주민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 납부시간 : 07:00~23:30 - 납세정보확인 : 24시간

※ 납세정보 : 인터넷 또는 무인수납기 등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조회 가능한 수단

○ 인터넷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인터넷지로	- URL : www.giro.or.kr -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 전자수용가번호(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금결원 운영시간 365일 : 00:30~23:30 (단, 경남 : 영업일 07:00~22:00)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 납세정보 : 공인인증서(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해당은행 공과금납부	- 새마을, 대구, 전북 00:30~22:00 (365일) - 신한, 하나 00:30~23:30 (365일) - 한국시티, 광주 07:00~22:00 (365일) - 국민, 우리, 우체국 07:00~23:30 (365일) - 농협 00:30~23:10 (365일) - 수협 00:30~23:30 (단, 매월 두 번째 토요일 23:30 ~ 익일 07:00 까지 금결원 시스템 정기점검으로 서비스 제공안함) - 부산 00:30~23:30 (단, 지로납부취소 토/일 이용불가 및 월 두 번째 토요일 23:30~익일 07:00 까지 금결원 시스템 정기점검으로 서비스 제공안함) - 산업 07:00 ~ 23:30 - 기업 뱅킹 01:30 ~ 22:00, 인터넷공과금 09:00 ~ 22:00 - SC제일 00:30 ~ 22:00 (단, 부산 07:00 ~ 22:00) - 제주 00:30 ~ 23:30 (단,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토/일 이용불가)

※ 납세정보 : 인터넷 또는 무인수납기 등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조회 가능한 수단

○ 자동이체/가상계좌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유의사항
자동이체	- 납세정보 : 납부번호(납세자 주민번호) - 결제방법 : 계좌이체 - 납부대상 : 부과고지 지방세 (정기·수시)	- 신청시간:은행 영업일 기준 09:00 ~ 22:00 - 실시간 신청 가능 (토/ 일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신청자에 한해서 전월말일까지 반영
가상계좌	- 납세정보 :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 결제방법 : 계좌이체(타행이체 가능)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자치단체별 가상계좌 납부 시간 상이함 - 우편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납부 방법' 참고	타행이체수수료 납세자부담

※ 납세정보 : 인터넷 또는 무인수납기 등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조회 가능한 수단

○ 은행/CD/ATM기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유의사항
자동이체	- 납세정보 : 고지서 - 결제방법 : 현금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은행영업시간 (09:00~16:00)	
은행점포 무인 공과금기	- 은행 : 국내 전 은행 - 납세정보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 신용카드 : 국내 카드사	은행영업시간 (09:00~16:00)	
CD/ATM기	- 납세정보 : (본인) 카드, 통장 (타인) 전자납부번호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은행영업시간 (09:00~16:00)	타행신용카드 이용시수수료 발생할수있음

※ 납세정보 : 인터넷 또는 무인수납기 등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조회 가능한 수단

2025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V 유익한 세무정보

- 01 세금 관련 증명원 발급처 현황 98
- 02 세금 관련 증명원 발급 인터넷 주소 98

01 세금 관련 증명원 발급처 현황

납부매체		발급기관	신청자
납세증명서, 납세(과세) 사실 증명서	국세	전국 세무서	■ 본인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 수임자의 신분증
	지방세	전국 시·군·구 세무과 동주민센터 민원실	
사업자등록 증명원		전국 세무서	
휴업사실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누구나
도시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02 세금 관련 증명원 발급 인터넷 주소

납부매체	발급기관	신청자
지방세 종합포털 “위택스”	www.wetax.go.kr	■ 지방세 관련 증명원 ■ 지방세 신고·납부·안내
국세 종합포털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 관련 증명원 ■ 국세 신고·납부·안내
“정부24”	www.gov.kr/portal/main/	■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등 모든 증명원 신청 및 발급 기능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확인),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열람 및 확인), - 확인서 : “정부24” 이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2025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발 행 일 2025년 4월
발 행 처 화성시청 세정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전 화 031-5189-2182
홈페이지 www.hscity.go.kr

※ 본 책은 안내·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본 책자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발행일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